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장기·집합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법제교육 전담 교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제 교육 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하는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는 한편, 중대범죄 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법령해석국 및 법제자문조정관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11. ~ 9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경찰청 및 소방청”을 “경찰청,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보한다”를 “보하며, 법제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7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제교육시설 운영계획 수립·시행

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법제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장기·집합 법제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·시행
2. 지방·공공기관 등 기관위탁 교육과정 운영
3. 기관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과정 운영
4.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개발·보급
5. 법제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

제14조제4항제3호 중 “재외동포청”을 “재외동포청, 공소청”으로, “소방청”을 “소방청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3항,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육운영팀은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제교육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제교육과장이 분장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법령해석국) ① ~ ④ (생략)	제8조(법령해석국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국가보훈부, 대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, 대통령경호처, 국가정보원,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국민권익위원회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, 재외동포청, 병무청, 방위사업청, <u>경찰청 및 소방청</u>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,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,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제9조(법제정보지원국) ① · ② (생략)	제9조(법제정보지원국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령정보총괄과장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자치법제지원과장 및	③ ----- ----- ----- -----

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
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⑦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
교재 제작·보급

5.·6. (생략)

7. 법제교육시설 운영에 관한
사항

<신설>

제14조(법제자문조정관) ① ~ ③

----- 보하며, 법제교육운
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
관으로 보한다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·5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
같음)

6. 법제교육시설 운영계획 수립
· 시행

⑧ 법제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
항을 분장한다.

1. 장기·집합 법제교육과정 운
영계획 수립·시행

2. 지방·공공기관 등 기관위탁
교육과정 운영

3. 기관협업형 융복합 법제교육
과정 운영

4.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
교재 개발·보급

5. 법제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

제14조(법제자문조정관) ① ~ ③

(생 략)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. 1. 2. (생 략) 3.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국무조정실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국민권익위원회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, <u>재외동포청</u>, 병무청, 방위사업청, 경찰청, <u>소방청</u>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. ~ 6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	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재외동포청, 공소청</u> ----- <u>소방청, 중대범죄수사청</u>--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	--